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혜련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40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3월 5일

발 의 자 : 김혜련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성언, 김경자(양천),
김기대, 김동욱, 김동윤,
김영한, 김용석(도봉),
김정태, 김제리, 문영민,
문형주, 박기열, 박호근,
서영진, 서윤기, 유광상,
유 용, 이병해, 이현찬,
장우윤, 장인홍, 장홍순,
최영수, 최관술 의원(24명)

1. 제안 이유

서울시는 5년 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으나,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실태와 특징, 시민의 다문화수용도 등을 계획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,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의 현황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가.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,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의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(안 제6조제5항 신설).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17조제3항의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~ ④ (생략) <u>〈신설〉</u>	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17조제3항의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</u>